

교훈 : 정직



가 정 통 신 문

제2020-033호

담당 : 교무기획부

2020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71

☎ 070-4706-1921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 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4.17

시흥매화중학교장[직인생략]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 학교발전기금 | 구분 | 불법찬조금 |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구성 명의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성되는 행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구성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사용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처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 (02-393-8900, hakbumo@hanmail.net)